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209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중원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35,734,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34,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7. 주식회사 D에 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C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84,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법 : 연 2.55%(변동금리),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지급
-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개별 거래)
- 상환 방법 :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 - 지연배상금율 : 연 12%

나. 주식회사 D은 2020. 5. 20.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1. 3. 26. 기한이익 상실처리를 하였다.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020. 6. 15. 기준 44,472,251원이다.

다. 피고는 2020. 6. 15. C과 사이에, 피고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7. 6.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C과 2014. 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2020. 6. 15.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C과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C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2020. 6.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5,734,5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6. 15. 당시 이미 위 보증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D은 2020. 5. 20.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곧 기한이익 상실처리가 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C과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본다.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C와 피고가 이혼 당시 각 보유하던 재산관계가 증명되고, 각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재산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피고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위 사항들에 관하여 ‘석명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앞서 법리에서 보듯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2017. 8. 11.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84,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4,166,690원이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실질적인 재산가액은 35,833,31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00,000,000원 - 64,166,690원]에 불과하다.

③ C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등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2016. 10. 17. C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경영을 위하여 2015. 5. 21.부터 2019. 11. 15.까지 총 25,700,000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혼기간 중 재산형성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